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자(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아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등에 일부 상충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 구의 출연금과 함께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의 출연금을 재원으로하여 기금을 조성할수 있었던 것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제5조에 근거한 출연금 성격의 모집금지규정으로 구지회 출연금 조성방법을 삭제함.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수 없음에도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금회 지방재정법제 29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개정
 - 기금의 관리에 있어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원화하여 운영할수 있던사항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없이 구금고에 일원화하여 예치관리하도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출연금, 보조금은 기부금 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할 수 없어 대한노인회 사하고 지회의 출연금 재원 조성 방법을 삭제한 사항이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 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자에서 관리 토록 되어 있어 관계 법규에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이며, 기금의 예치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구금 고에 일원화하여 예치 토록 개선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일부 상충되는 문제를 금회 조례 개정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